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0783 지방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5. 19.
판 결 선 고	2020.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9

가. 원고는 2015. 3. 12. 설립되어 박스, 포장지 제작과 인쇄용지, 종이, 상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redacted]시 B 공장용지 2182.5㎡를 포함한 6필지의 토지와 B 등 지상 건물 3개동(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아래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연번	신고일	과세물건	과세표준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1	2016. 5. 27.	[redacted]시 B, C, D, E 토지 3,175.9㎡	900,725,000	36,029,000	1,801,450	3,602,900	41,433,350
2	2016. 9. 30.	[redacted]시 F, D, E 토지 4,629.4㎡	1,380,000,00	55,200,000	2,760,000	5,520,000	63,480,000
3	2017. 1. 6.	[redacted]시 B 지상 건물 3,475.94㎡	1,847,217,471	51,722,080	3,694,430	2,955,540	58,372,050
4	2017. 1. 6.	[redacted]시 B, F 토지 5,380.9㎡	16,242,280	324,840	32,480	-	357,320
5	2017. 2. 20.	[redacted]시 B외 1필지 지상 건물 960.99㎡	63,000,000	1,260,000	126,000	-	1,386,000
6	2018. 7. 13.	[redacted]시 G, D, E 토지 3,669㎡	1,230,000,000	49,200,000	2,460,000	4,920,000	56,580,000
합 계			5,437,184,751	193,735,920	10,874,360	16,998,440	221,608,720

다.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27. 원고의 설립이 원고의 대표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새롭게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취득세 경감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A이라는 상호로 원고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박스 등을 제조하는 개인 사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개인은 구분되는 사업주체이고, 이 사건 업체와 원고의 운영실태, 거래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업체는 원고와 무관하므로 원고의 설립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액경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H는 2007. 12. 5.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2. 6. 21. 주 업종을 서비스 광고기획에서 박스제작(합지, 도무송톰슨)으로 변경하였고, 2017. 1. 20. 이 사건 업체의 소재지를 [redacted]시 I에서 J으로 정정 ·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2. [redacted]시 I를 주소로 설립되었다가 2016. 12. 27. 현재의 주소지인 J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주 업종을 박스제작(합지, 도무송톰슨)으로 사업자등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9

을 마쳤다.

3) H는 자신과 가족의 지분을 89%, 이 사건 업체 직원들의 지분을 11%로 하여 원고를 설립한 뒤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위 직원들은 주식을 모두 H의 가족에게 양도하여 현재 원고의 주식은 모두 H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

4)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H가 1993년경 설립하여 운영해 온 이 사건 업체로부터 회사가 이어져 온 것으로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5) 원고의 설립 후 이 사건 업체의 매출액은 2018년까지 매년 감소하였고, 2015년 이전에 이 사건 업체의 주요 매출처이던 K는 2015년 원고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업체가 되었다. 한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업체의 원고에 대한 매출액, 그 비율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원고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도	총매출액	원고에 대한 매출액	원고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
2015년	3,010,503,321원	266,985,055	9%	2,743,518,266원
2016년	2,389,072,353원	1,327,685,168	56%	1,061,387,185원
2017년	1,639,954,599원	1,016,317,420	62%	623,637,179원
2018년	1,368,155,351원	1,051,800,000	77%	316,355,35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경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9

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경감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H가 사실상 지분을 전부 소유하여 이 사건 업체와 함께 경영하는 회사로 그 소재지와 영업의 종류가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업체의 매출액은 원고 설립 후 점차 감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할 경우 매출감소가 현저하며,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주요매출처를 승계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과 연속되거나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③ 원고의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건 업체로부터 회사가 계속된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매출처가 이 사건 업체보다 다양해지고,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확장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설립으로 새로운 사업이 최초로 개시되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설립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9

따라서 원고의 설립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끝.